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.

※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.

※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(고객)와 수탁자(은행)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

신탁계약일		계약명
구분	내용	
제4조	신탁금액(최초)	원
제12조	신탁보수	운용자산별 신탁보수율은 아래에 작성하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따릅니다.

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

(1) 신규액 운용지시 (운용지시 방식을 비율 또는 금액 중 택일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위험등급	운용방법 (자산종류)	상세운용지시(자산명)	투자방식 지정 (택일)		신탁보수율 (연 %)
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율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액	

(2) 계속성 운용지시 (향후 입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자산 매수 운용지시서)

□ 신규액 운용지시 내용과 동일 (신규액 운용지시를 비율로 지시하고, 운용자산 모두 적립가능자산군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하게 운용지시 가능합니다.)

위험등급	운용방법 (자산종류)	상세운용지시(자산명)	편입비율(%)	신탁보수율 (연 %)

※ ELB, ELS 등 적립가능 불가(거치식) 자산은 계속성 운용지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하고자 합니다.

위탁자	주소 : 성명 : 인 (서명) 생년월일 :
대리인	주소 : 성명 : 인 (서명) 생년월일 : 성명 : 인 (서명) 생년월일 :
수탁자	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.

■ 운용내역 통보 방법

자택우편 직장우편 전자우편(E-mail) 통보생략(불원)

■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(문자통보안내) 신청

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거절합니다. - 신탁만기도래, 운용자산 만기도래, 추가입금액,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	고객명 : 인 (서명)
		대리인 : 인 (서명) 인 (서명)
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.

※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.

※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(고객)와 수탁자(은행)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

신탁계약일		계약명
구분	내용	
제4조	신탁금액(최초)	원
제12조	신탁보수	운용자산별 신탁보수율은 아래에 작성하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따릅니다.

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

(1) 신규액 운용지시 (운용지시 방식을 비율 또는 금액 중 택일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위험등급	운용방법 (자산종류)	상세운용지시(자산명)	투자방식 지정 (택일)		신탁보수율 (연 %)
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율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액	

(2) 계속성 운용지시 (향후 입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자산 매수 운용지시서)

□ 신규액 운용지시 내용과 동일 (신규액 운용지시를 비율로 지시하고, 운용자산 모두 적립가능자산군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하게 운용지시 가능합니다.)

위험등급	운용방법 (자산종류)	상세운용지시(자산명)	편입비율(%)	신탁보수율 (연 %)

※ ELB, ELS 등 적립가능 불가(거치식) 자산은 계속성 운용지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하고자 합니다.

위탁자	주소 : 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 :
대리인	주소 : 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 : 성명 : 인(서명) 생년월일 :
수탁자	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
■ 운용내역 통보 방법

자택우편 직장우편 전자우편(E-mail) 통보생략(불원)

■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(문자통보안내) 신청

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거절합니다. - 신탁만기도래, 운용자산 만기도래, 추가입금액,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	고객명 : 인(서명)
		대리인 : 인(서명) 인(서명)
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락 계약서

제1조 (약관의 목적)

① 이 약관은 고객(이하 "위탁자")과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수탁자")간에 특정금전신락계좌를 체결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락계좌)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이 약관은 신락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충법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.

제2조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
1.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
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형태로 개설한 계좌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자본시장법" 이라 함)에 따른 신락업자와 특정금전신락계좌를 체결한 신락계좌인 것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
4. 신락기간이 3년 이상인 것
5. 총 납입금도가 1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영적측 또는 정기집합투자증권투자처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영적측 및 정기집합투자증권투자처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 이하이고, 연 납입금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

2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

② 제1항에 따른 "거주자"란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.(이하 같다)

제3조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"계좌"라고 한다)에 가입하거나 신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자소득 등"이라 한다)의 합계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을 부과하지 아니하며,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
2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 이후의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
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이후의 과세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을 부과하지 아니하며,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)
- 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)
- 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 이후의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해에 다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신락금액)

① 이 신락계약에서 최초로 신락하는 최저 신락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.
② 위탁자는 신락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.
③ 신락기간(3년 이상) 동안 신락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.

제5조 (신락기간)

① 신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기간으로 하며, 위탁자는 신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② 수탁자는 신락기간 종료일 최소 7개월 전까지 신락기간이 끝나는 날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락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신락금형 유형은 기존 신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락계약은 연장된 신락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.

제6조 (신락재산의 운용)

① 위탁자는 [별표1]의 신락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락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[별표2]의 특정금전신락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,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락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.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신락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-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신락계약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신락주최자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③ 위탁자는 이 신락계좌를 다른 신락재산과 구분하여 관리, 운용한다.
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락재산 운용방법의 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 (대리인의 지정)

① 위탁자는 제6조에 정한 신락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9조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용내역 확인 등)

① 위탁자가 신락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위탁자가 본인, 배우자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 (법적절차)

신락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.

제10조 (원본과 이익의 보존)

이 신락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
제11조 (손익의 귀속)

신락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.

제12조 (신락재산의 표시)

신락재산에 대하여는 신락의 동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동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락재산임을 표시한다.

제13조 (신탁보수)

① 신탁보수는 이 계약에 따른 신락재산 중 운용자산별 신탁보수와 고수계좌에 대한 신탁보수의 합으로 아래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.

운용자산별 신탁보수 = 운용자산평균연액 × 신탁보수율 연() % × 자산운용기간(일수) / 1년
고수계좌에 대한 신탁보수 = 고수계좌대평균연액 × 신탁보수율 연() % × 자산운용기간(일수) / 1년

- ② 운용자산평균연액(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자산평균평가액, 그 외의 운용방법인 경우 운용자산평균매입액)은 일별 운용자산운용 자산운용기간(일수) 동안 누적이하여 합한 금액을 자산운용기간(일수) 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- ③ 운용자산별 신탁보수는 별도 작성하는 운용지시서에 따른다.
- ④ 본 조에서 운용자산별 자산운용기간(일수) 계산은 자산의 최초 매입 결제일로부터 자산의 최초 매도결제일(상환일) 전일까지로 한다.
- ⑤ 본 조에서 신탁기간(일수) 계산은 신락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지급일부터 제6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.
- 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락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인출을 지급하는 날에 신락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이익의 계산 및 지급)

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락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따른다.
1. 신락계약 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
2.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락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
3. 그 밖의 날
② 신락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락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 (세금 및 비용)

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락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락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락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.

제16조 (부담이전 계약해지 사유)

위탁자의 사망,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1. 전제변압
2. 위탁자의 퇴직
3. 사업상의 폐업
4.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
5. 수탁자의 영일 영지, 영영민가-여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제17조 (중도해지)

① 제5조에서 정한 신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락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 신락계좌를 차분하여 관리하여 신락이익의 실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락재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락계좌를 차분하여 현금과 가동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정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
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(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제16항)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받으며, 해당 소득은 추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.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액이 초과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,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액이 계약의 해지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⑤ 위탁자가 신락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해지일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.

제18조 (신락계약의 종료)

① 제5조에 따른 신락이익이 만료되어 신락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락계좌를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락계좌를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정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락계좌를 운용정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(계좌)에 따른 요건에 해당한다면 운용정상대로 교부되는 신락재산에 대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락계좌를 운용정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, 관리 및 추심을 한다.
④ 신락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락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락계좌를 운용한다. 이 경우 신락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50%로 계산한다.
⑤ 신락계약의 만기가 신락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락계약이 종료될 때 신락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락재산 및 신락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신락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정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 또한 신락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락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

제19조 (최종계산)

① 신락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.
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"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20조 (담보제공)

이 신락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 (신락계약의 변경 등)

① 수탁자는 이 신락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1항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
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 신락 계약서(이하 "계약서"라 한다)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계약서에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의를 교부하여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(오른 클릭)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사고 및 고지)

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하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1. 중사, 거래인강 등을 분실, 도난,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
2. 위탁자, 대리인, 그 밖의 신락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·성호·주소·전화번호 등의 변경, 사망 또는 영위능력이 변동이 있을 때

제23조 (인강신고)

위탁자가 거래인강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강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보고 본인만의 절차를 실시하여 신락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강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4조 (특약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신락법 등 신락법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25조 (관계법규 등 준수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법 및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등"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제26조 (분쟁조정)

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규칙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7조 (관할법원)

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으로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8조 (관계법규 등 준용)

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락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제29조 (신락계약서 작성)

이 신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락증서를 교부한다.

년	월	일	
위탁자 주소:	_____	수탁자 주소:	_____
성명:	(인)	성명:	(인)

[별표1]

신락재산 운용방법
다음의 신락재산 운용방법(1. 내지 7에서 정한 방법)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[별표2]의 신락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집합투자증권	2.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*	3. 환대조권채권
4.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	5. 예금·적금·예탁금	6.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
7. 증권상장법인의 주식		

*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의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-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락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, 신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락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.

[별표2]

특정금전신락 운용지시서
귀사와의 특정금전신락계약에 의하여 신락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.

신락재산 운용방법 (별표1)	세부내용	위탁자확인
_____	_____	_____

_____ 운용지시는 별도로 작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락 운용지시서에 따릅니다.

